

-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강사 위촉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포상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14조
 -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2조
 -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, 제6조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8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- 그 밖의
 - 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4. 1. 4. ~ 2024. 1. 11.)
 - 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 - 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 12. 12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, 조사·연구, 훈련·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